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91호(號) 1933(昭和 8)년 12월 28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45호(號)

1933(昭和 8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78호(號)(조선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화물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12월 28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제2항(項) 별표(別表) (1)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(南滿州鐵道株式會社 北線鐵道管理局)의 항(項) 특종취급사항란(特種取扱事項欄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2 북선(北線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투먼선(圖們線: 투먼역[圖們驛]을 포함[包含]함)에서는 발착역(發著驛)에 있어서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적사(積卸)를 대변(代辦)함.